

울산광역시 동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683호 2026. 8. 25.(화)

입법예고

-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

안 내	○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							
	회	람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 동구

편집 : 기획예산실(☎ 209-3047, 행정 3047)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849호

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8월 25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에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규정(안 제1조)
- 나.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(안 제11조제1항)
- 다.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참여 범위 확대(안 제12조제4항제4호)
- 라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전반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【붙임1】

4. 근거법규: 【붙임2】

- 가.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20조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(참조 : 노인장애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주소: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(화정동), 동구청 노인장애인과

2) 팩스번호: 052) 209-3429

3) 전자우편(E-mail): rhsoon2000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(전화 (052)209-34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(<http://www.donggu.ulsan.kr>) [동구소식 - 고시/공고 - 입법예고]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조 례 명	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			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		전화번호	
	주 소			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		
「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6년 월 일 제출자 (서명)						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

붙임 1 **일부개정조례(안)**

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”을 “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”으로, “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”을 “돌봄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대상자에게 우리 지역”을 “대상자가 지역사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사람으로 한다”를 “사람을 말한다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동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)”을 “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행하여야”를 “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하여야”를 “포함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계하여야”를 “연계해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 중 “등”을 “사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내하여야”를 “안내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반영하여야”를 “반영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공하여야”를 “제공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점검하여야”를 “점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주민들”을 “주민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통합지원 사업”을 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위원 중”을 “위촉직 위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, 보건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,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(종전의 제3항)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보건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,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 하고, 위촉직”을 “위촉직”으로, “위촉하되,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주민자치단체·조직에 소속된 사람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4조 단서 중 “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”을 “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기관·참여”를 “기관의 참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예

산”을 “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준수하여야”를 “준수해야”로, “이용하여서는 아니”를 “이용해서는 안”으로 한다.

8. 25.(화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</u> 써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----- 돌봄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통합지원”이란 통합지원 <u>대상자에게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생활돌봄,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</u>	1. ----- <u>대상자가 지역사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통합지원 대상자”란 울산광역시 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을 말한</u>

는 사람으로 한다.

가. · 나. (생 략)

다.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
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,
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
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 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
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
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
다.

제4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 ①

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
여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
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
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동
구 통합지원 지역계획(이하 “지역
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
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 략)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
계획 수립 시 「사회보장기본
법」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

다.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 동구청장
(이하 “구청장”-----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 노력해야 -----.

제4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 ①

----- 시행해야 -----.

② -----
----- 포함해야 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8. 25.(화)

지역계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
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
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지역
사회보장에 관한 계획, 「지역보
건법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
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.

제5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 ① 구
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
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
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
서비스, 보조기기 지원 등

8.·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개인별 지원계획 수립) ①
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
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
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
이를 안내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
자의 의료,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
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
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
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

--- 연계해야 -----.

제5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 ① 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----- 사업

8.·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개인별 지원계획 수립) ① -

----- 안내해야 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반영해야
-----.

③ -----

8. 25.(화)

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---- 제공해야 -----.

제7조(통합지원 제공 등)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합지원 제공 등) ① -----

----- 노력해야 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,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----- 통보해야 -----.

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③ -----

----- 점검해야 -----

-----.

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-----

----- 노력해야 -----.

제9조(통합지원 창구 설치)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

제9조(통합지원 창구 설치) -----

8. 25.(화)

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
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
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·운영
할 수 있다.
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구청
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
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
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
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
다)를 둔다.

② (생략)

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①
(생략)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
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〈신설〉

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
를 담당하는 국장과 보건소장, 국
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,
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
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
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
되,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
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----- 주민-----

-----.
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-----
--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
지원 사업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 위촉직 위원 중-----.

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
담당 국장, 보건소장, 국민건강보
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, 국민연
금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-----

--- 위촉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8. 25.(화)

〈신 설〉

4. (생 략)

〈신 설〉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.

⑤ (생 략)

제14조(수당)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6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,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주민 및 관련 기관·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

2. ~ 4. (생 략)

② (생 략)

4.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주민자치단체

· 조직에 소속된 사람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〈삭 제〉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14조(수당) -----

----- . ----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-----
-----.

제16조(교육 및 홍보) ① -----

-----.

1. ----- 기관의 참여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8. 25.(화)

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조 및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-----

----- 예산의 범위 -----

-.

제17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 -----

----- 준수해야 -

----- 이용해서는 안 -----.

붙임 2**근거법규****□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**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0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3.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